

● 제295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0. 6. 16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1550

I. 조례안 개요

1. 발의자 및 제안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의 11명
- 나. 발 의 일 : 2020. 5. 25.
- 다. 회 부 일 : 2020. 5. 29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성별영향평가는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요소 및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평가도구임.
- 이에 성별영향평가의 보다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위임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-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

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하여 타당성 확보 및 정책적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.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.(안 제1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성별영향평가(Gender Impact Assessment)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정책이 양성 평등 관점에서 기획·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 및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함.
- 성별영향평가는 이전까지는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조례」를 근거로 시행하던 것을 서울시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강조되면서, 2019년 7월 18일 별도의 「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」를 제정한 바 있음.
- 동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,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실장으로 명확히 하여,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평등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시장의 책무 강화 (안 제3조)

-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의 시장의 책무 조항을 상위법인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3조1)를 반영하여 선언적이거나 성별영향평가의

실효성을 높이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<u>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<u>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□ **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(안 제18조)**

○ 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업무의 총괄인 성

-
- 1) 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2. 3., 2018. 3. 27.>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3., 2018. 3. 27.>

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현행 조례가 “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”으로 해당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 그 대상이 다소 불명확해진 바,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실장으로 그 책임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<u>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</u> 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. ② (생략)	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<u>여성가족정책실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. ② (현행과 같음)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,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,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.